

전북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 04. 15 훈령 제22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학칙」 제31조의2(대학평의위원회)에 따라 설치되는 전북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평의위원회의 전체 평의원 정수는 22명으로 하되 각 구성단체별 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11명
 2.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3.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2명
 4. 전국대학노동조합전북대학교지부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5. 조교회에서 추천하는 조교 1명
 6.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재학생 5명
 7.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평의원은 각 구성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총장이 임명·위촉 한다.
- ③ 제1항제7호의 평의원은 총장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3조(기능) ①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총장, 의장 또는 재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현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자격) ① 각 구성단체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평의원은 본교 정년트랙의 전임교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2. 직원 평의원은 본교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3. 조교 평의원은 본교 조교로서 재직 중인 자
4. 학생 평의원은 본교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
5. 외부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졸업생 중 외부인사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임기 또는 재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퇴직 또는 임용기간 만료
2. 징계요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 중인 자
3. 연구교수로 선발되거나 3개월 이상 해외연수가 필요한 교직원 또는 3개월 이상 연수·교환·방문 학생으로 선발된 재학생
4. 휴학, 수료 또는 졸업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가 발생한 자

제5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구성원이 소속 구성단체의 구성원 신분을 상실하거나 제2조제1항 각호의 구성단체로부터 추천 철회가 평의원회로 통보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의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평의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평의원의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단체는 사유발생 후 14일 이내에 후임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그 추천 절차는 각 단체에서 따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따른 후임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장 등의 선임과 임무) ① 평의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승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7조(임시의장 등의 선출) 임시의장 등을 선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보궐선출을 할 때
3.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제8조(회의 개최 및 의결) ① 평의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판단을 위해 자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④ 평의원회는 총장의 심의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심의사항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자료제출) 의장은 총장에게 평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평의원은 평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의 공개 등) ① 평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회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평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12조(개정) 이 규정은 평의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평의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평의위원회의 시행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19.04.15 훈령 제226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